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안내에 관한 협조 요청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된 「철도안전법」(2018.6.12. 공포, 2019.6.13. 시행) 제38조의12에 따라 철도차량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을 운행한지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1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의 신청을 받아 개정된 「철도안전법」 시행 후 바로 정밀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에게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공지)하고자 귀 기관의 홈페이지(알림마당, 입찰정보 등)에 붙임 내용의 게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니 2019.4.30.(화)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내(공지)를 게시한 경우 게시 코너를 전자우편(igoto@korea.kr, kyu019@korea.kr)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방법 : 게시 제목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로 하여(붙임 1)을 게시물의 본문으로 하고, 본 공문 및 (붙임 2)를 게시물의 첨부로 게시(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철도산업정보센터"에 게시)

- 붙임 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 안내(공지) 1부.
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련 규정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한국철도협회 회장,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장, 한국도시철도협회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주)SR 대표이사, 서울교통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 서울9호선 운영(주) 대표이사, 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신분당선(주) 대표이사, 경기철도(주) 대표이사, 부산김해경전철(주) 대표이사, 용인경량전철(주) 대표이사, 인천교통공사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김선호** 기술서기관 **박해규** 철도운영안전 전결 2019.2.11.
과 과장 **송시화**

협조자

시행 철도운영안전과-408 (2019.02.1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610 팩스번호 044-201-5672 / igoto@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